

파주 운정3지구 A11블록 중흥S-클래스 에듀하이 입주자 모집공고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청 주택과 - 26654호(2021.06.23.)로 입주자모집공고승인

■ 공급위치: 경기도 파주시 운정3택지개발지구 A11블록(경기도 파주시 다율동 567외)

■ 공급규모: 아파트 지하 최저 2층 ~ 지상 최고 20층 10개동 총 75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특별공급 348세대(기관추천 특별공급 56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7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114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1세대, 생애최초 85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m²,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세대당 계약면적(m ²)				세대별 대지자본 (m ²)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 배정세대	입주 예정 시기	
					세대별 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계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2021000419	01	059.9701	59	59.9701	18.9341	78.9042	46.0765	124.9807	45.4848	200	19	19	39	5	29	111	89	10	2024년 03월 예정
		02	084.9873A	84A	84.9873	25.5857	110.5730	65.2978	175.8708	64.4593	303	30	30	60	9	45	174	129	16	
		03	084.9390B	84B	84.9390	28.2524	113.1914	65.2608	178.4522	64.4226	79	7	7	15	2	11	42	37	4	
		04	113.9742	113	113.9742	31.8660	145.8402	87.5692	233.4094	86.4446	168	-	16	-	5	-	21	147	10	
		합계										750	56	72	114	21	85	348	40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m, 천원)

주택형	동별 (라인별)	공급 세대수	층 구분	해당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회	2회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계약시	21.08.26
059.9701	101동(1호,2호,3호,5호), 102동(1호,2호,3호,5호), 106동(1호,2호)	200	1층	10	96,652	192,348	-	289,000	10,000	18,900	28,900	28,900	28,900	28,900	28,900	28,900	28,900	28,900	86,700
			2층	10	96,652	200,348	-	297,000	10,000	19,700	29,700	29,700	29,700	29,700	29,700	29,700	29,700	29,700	89,100
			3층	10	96,652	208,348	-	305,000	10,000	20,500	30,500	30,500	30,500	30,500	30,500	30,500	30,500	30,500	91,500
			4층	10	96,652	215,348	-	312,000	10,000	2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31,200	93,600
			5층	10	96,652	222,348	-	319,000	10,000	21,900	31,900	31,900	31,900	31,900	31,900	31,900	31,900	31,900	95,700
			기준층	150	96,652	229,348	-	326,000	10,000	22,600	32,600	32,600	32,600	32,600	32,600	32,600	32,600	32,600	32,600
084.9873A	103동(1호,3호,5호), 104동(1호,3호,5호), 105동(1호,2호,3호), 106동(3호,5호), 107동(1호,2호,3호,5호), 110동(1호)	303	1층	13	136,971	256,029	-	393,000	10,000	29,300	39,300	39,300	39,300	39,300	39,300	39,300	39,300	39,300	117,900
			2층	16	136,971	264,029	-	401,000	10,000	30,100	40,100	40,100	40,100	40,100	40,100	40,100	40,100	40,100	120,300
			3층	16	136,971	272,029	-	409,000	10,000	30,900	40,900	40,900	40,900	40,900	40,900	40,900	40,900	40,900	122,700
			4층	16	136,971	279,029	-	416,000	10,000	31,600	41,600	41,600	41,600	41,600	41,600	41,600	41,600	41,600	124,800
			5층	16	136,971	286,029	-	423,000	10,000	32,300	42,300	42,300	42,300	42,300	42,300	42,300	42,300	42,300	126,900
			기준층	226	136,971	293,029	-	430,000	10,000	33,000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43,000
084.9390B	103동(2호), 104동(2호), 105동(5호), 110동(2호)	79	1층	3	136,893	236,107	-	373,000	10,000	27,300	37,300	37,300	37,300	37,300	37,300	37,300	37,300	37,300	111,900
			2층	4	136,893	244,107	-	381,000	10,000	28,1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38,100	114,300
			3층	4	136,893	252,107	-	389,000	10,000	28,900	38,900	38,900	38,900	38,900	38,900	38,900	38,900	38,900	116,700
			4층	4	136,893	259,107	-	396,000	10,000	29,600	39,600	39,600	39,600	39,600	39,600	39,600	39,600	39,600	118,800
			5층	4	136,893	266,107	-	403,000	10,000	30,300	40,300	40,300	40,300	40,300	40,300	40,300	40,300	40,300	120,900
			기준층	60	136,893	273,107	-	410,000	10,000	3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41,000
113.9742	108동(1호,2호,3호,5호), 109동(1호,2호,3호,5호), 110동(3호,5호)	168	1층	9	183,688	262,101	26,211	472,000	10,000	37,200	47,200	47,200	47,200	47,200	47,200	47,200	47,200	47,200	141,600
			2층	9	183,688	269,374	26,938	480,000	10,000	38,000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48,000	144,000
			3층	10	183,688	276,647	27,665	488,000	10,000	38,800	48,800	48,800	48,800	48,800	48,800	48,800	48,800	48,800	146,400
			4층	10	183,688	283,010	28,302	495,000	10,000	39,500	49,500	49,500	49,500	49,500	49,500	49,500	49,500	49,500	148,500
			5층	10	183,688	289,374	28,938	502,000	10,000	40,200	50,200	50,200	50,200	50,200	50,200	50,200	50,200	50,200	150,600
			기준층	120	183,688	296,647	29,665	510,000	10,000	4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153,000

※ 평형환산방법: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II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계약체결
	일반(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일정	2021.07.05.(월)		2021.07.06.(화)	2021.07.07.(수)	2021.07.13.(화)	2021.07.15.(목) ~ 2021.07.24.(토)	2021.07.26.(월) ~ 2021.07.30.(금)
방법	인터넷 청약(08:00 ~ 17:30)		인터넷 청약(08:00 ~ 17:30)	인터넷 청약(08:00 ~ 17:30)	개별조회(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10:00 ~ 16:00)	(10:00 ~ 16: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10:00~14:0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 계약 체결 일정은 당첨자 발표 후 별도 공지 예정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 신종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변동될 수 있으니 확인)에서 청약 가능함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당일 인증서 설치문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I 특별공급 신청자격

■ 특별공급 주택형태별 공급세대수

(단위: m, 세대)

구분	구분				합계		
	059.9701	084.9873A	084.9390B	113.9742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3	5	1	-	9
		인천시	2	3	1	-	6
		서울시	2	3	-	-	5
		국가유공자	3	3	1	-	7
	국가보훈처	장기복무 제대군인	2	3	1	-	6
		10년이상 장기복무군인	2	4	1	-	7
		중소기업근로자	4	5	1	-	10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철거민	1	2	1	-	4	
	북한이탈주민	-	2	-	-	2	
	경기도 거주자(50%)	10	15	4	8	37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50%)	9	15	3	8	35	
	신혼부부 특별공급	39	60	15	-	114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5	9	2	5	21		
생애최초 특별공급	29	45	11	85	85		
합계	111	174	42	21	348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56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본인, 배우자 등 우선순위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없는 자는 제외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72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0% 범위): 114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고 혼자가 아닌 1년 이내 혼인관계중(세)의 신고일을 기준, 재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준주택을 저가주택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인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21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받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함)(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5% 범위): 85세대

• 대상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세대내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

IV 일반공급 신청자격

■ 일반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제외)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태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파주시 거주자(1년이상)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20%,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봄. 단,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봄. 또한,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단위: 만원)

구분	파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연계 모두 청약이 가능.

V 기타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원)

구분	감리회사	감리금액	비고
건축	(주)중앙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